

신고·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



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▶ 신고서·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
- ▶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

· 신고서 제출서류 목록

분류	종류	서식 (지방세법 시행규칙)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별지 제43호
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별지 제43호의2
	안분명세서	별지 제44호의6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	별지 제43호의3
	가산세액 계산서	별지 제43호의4
첨부서류	특별징수세액명세서	별지 제43호의5
	재무상태표	
	포괄손익계산서	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	
	소급공제 환급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9
	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1
기타서류	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제43호의12

·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·납부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

$$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+ 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※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
·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

※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

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.



■ 직권 연장

- ① 대상: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,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
 ※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제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,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- ② 연장기한: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
 ※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신고·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. (1회 추가연장도 가능)

■ 신청 연장

- ① 관광업, 여행업, 공연 관련업,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실시
 ※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, 제7조에 근거
- ② 신청방법 : 장성군청 재무과에 신청서* 제출
 * 신청서: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, 연장 받으려는 기한, 연장사유, 그 밖의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■ 문의처 : 장성군청 재무과 (061)390-7286

www.mois.go.kr



국세청 홍보대사 이지은(아이유)·이서진